

#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4. 22.  
행정소방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9년 4월 14일  
강태원 의원 외 6인
2. 회 부 일 자 : 2009년 4월 16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2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2009. 4. 20)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유인물 대체)

### 1. 제안이유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도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를 충청북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홍보대사 임기 : 2년, 연임가능
- 홍보대사 보상 : 무보수 명예직, 필요경비 지급
- 홍보대사 총괄운영부서 지정 : 공보관실

- 홍보대사 위촉 및 해촉
  -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 경제적·문화적 가치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 사임의사표시, 홍보대사활동 기피
  -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할 때

###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

- 본 조례 제정안은 강태원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충청북도정을 국내외로 홍보하는 홍보대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충청북도를 대표하여 도의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등을 국내외로 홍보하는 홍보대사의 위촉요건을 인지도 높은 유명인 및 전문가로 하고, 직무수행이 부적당한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홍보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 보상방법 등을 명료하게 정하는 것임.
-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자치단체의 브랜드가 중요한 홍보요소가 되고 있으며, 도정을 국내외 알리기 위하여 일회성의 홍보대사 운영보다는 충청북도의 브랜드와 위상을 제고하는 홍보대사를 지정운영하는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법령입안 심사 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사항으로 내용에 다른 의견은 없으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V. 토론 요지 : “생 략 ”

VI. 심사 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 등

##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충청북도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충청북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도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도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 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공보관실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총괄 및 운영) 홍보대사관련 업무 총괄은 공보관이 담당하되, 운영은 공보관실과 사전에 협조하여 사업주관 부서에서 한다.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 관계법령 발취

###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별표 1. 전국 홍보대사 조례 및 규정 현황

시·도	시·군·구	조례명	기타
대구광역시	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	규정
인천광역시	강화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칙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양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강원도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칙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	
	양구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고성군	고성군정홍보위원 운영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서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명예홍보대사운영규정	규정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보성군	홍보대사에 관한 규정	규정
	해남군	명예홍보대사 운영 규정	규정
	영광군	명예홍보대사 운영 규정	규정
경상북도	영양군	홍보대사 조례	
	영덕군	홍보대사에 관한 규정	규정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북제주군	북제주군정홍보위원운영조례	폐지